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기능 강화 등〉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36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가.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기능 강화	2
나. 조사결과의 관계부처 통보 시 판단재량 부여	6
※ 참고자료	
1. 산업입지 조사통계 사업 현황	11
2. 법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액 산출 주요 내용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17.
3. 회부연월일 : 2025. 10.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현황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Ⅲ. 검토의견

가.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기능 강화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뿐만 아니라 통계의 작성·관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및 통계 범위에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관리를 포함하는 한편,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협조요청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u>조사</u> (이하 “ <u>입지조사</u>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 ----- ----- ----- <u>조사를 하거나</u> <u>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u> 등의 관리	4의2. <u>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u> ----- ---
<신설>	4의3. <u>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관리</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u>	② ----- <u>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위하여</u>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u>와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시·도사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입지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u> <u>통보하여야 한다.</u> ④ 제3항에 따라 <u>입지조사</u>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u>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u>에 반영하여야 한다.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 <u>조사 결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u> -----. ④ -----<u>조사</u>----- ----- ----- ----- --<u>산업입지수급계획</u>----- -----.
---	---

현행법 제6조제1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과 산업기반시설의 관리,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등을 위해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음.

1)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이하 “입지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산업입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기업의 활동, 산업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관련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나아가,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이나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관리 등을 위해서도 현황 조사 및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가 필요하고, 공공 및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자료 수집 범위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약될²⁾ 우려가 있음.

안 제6조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에서 나아가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제1항)하고, 조사 및 통계 작성 대상 범위에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제1항제4의2호), 입주기업체 및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3. 공장입지의 기준 설정

4.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4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등의 관리

5. 그 밖에 산업입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현행법 제6조제2항은 시·도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원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1항제4의3호) 등을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료요청 권한(제2항)을 마련함으로써, 체계화된 통계 작성·관리를 바탕으로 산업입지 관련 정책 지원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도 산업단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통계 자료 기반의 산업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의 관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관리를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 범위에 포함할 경우 재정소요는 2027년 8억 5,000만원, 2031년 9억 2,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44억 2,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참고자료 2).

나. 조사 결과의 관계부처 통보 시 판단 재량 부여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입지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을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통보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입지조사 결과를</u>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③ ----- ----- <u>조사 결과</u>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u>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u> ----- -----.
④ 제3항에 따라 <u>입지조사</u>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u>산업입지공급계획</u> 수립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 <u>조사</u> ----- ----- ----- ----- ----- <u>산업입지수급계획</u>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 제5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 규모의 산정방법
3.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수급전망

로 하여금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동지침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제3항⁴⁾을 준용하여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함

-
-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시·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 ⑥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⑦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이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개정안은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 산업입지 등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집된 정보의 공유 및 활용 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판단 재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특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산업입지 등의 조사 범위를 지식산업센터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권한을 신설할 경우, 수집된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당초 수집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함께 부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통상부장관 소관의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는 산업입지 등의 조사 결과를 현행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여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당초 정보 수

집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음.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⁵⁾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 수립을 위해 5년 단위의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집한 중앙 행정 및 공공데이터 조사 결과는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 조사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및 부처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각 부처 소관 기본계획 간의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2.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수립
3.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② < 생 략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 생 략 >

문 의 처
02)6788-5468

참고 1

산업입지 조사통계 사업현황

(출처: 산업통상부)

□ 사업목적

- 「산업집적법」 제6조, 「통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입지 현황을 조사하여 산업단지 관리 효율화 및 산업입지 정책 수립의 기초 통계로 활용하기 위함

□ 사업내용

- 산업입지 조사통계인 ①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②전국산단 현황통계를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작성 및 공표함

구분	① 주요 국가산단 산업동향	② 전국산단 현황통계
조사목적	•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사업활동 및 산업동향 파악 및 기초통계로 활용	• 산업입지 조성 이후 분양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입지 정책 지원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 83개 산단 표본업체(5,500개사)	• 국가, 일반, 농공, 도청 1,341개
조사항목	• 입주업체수, 가동업체수, 가동률 •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	• 산단 지정·관리·분양면적 • 입주업체수,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
조사주기	• 분기 조사 및 공표	• 분기 조사 및 공표
조사방법	• 산업단지공단 조사	• 산업단지공단/17개 광역시도 직·간접 조사

- 이외 격년마다 산단 입주기업체 현장조사를 시행, 입주 및 공장등록 현황 등을 조사하여 산단 관리제도 개선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구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전수조사
조사목적	• 산업단지 관리(입주계약·공장등록 등) 효율화 및 제도 개선
조사대상	•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83개 산단,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가동기업
조사 주기·방법	• 격년(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 전수 및 현장방문 조사
조사방법	• 사업장별 입주 및 공장등록 현황, 가동기업 사업활동, 안전관리 현황 등

□ 사업예산 및 집행

- ‘25년 기준 7억 1,900만원 편성, 최근 5년 결산 기준 산업입지 조사통계 사업비는 연평균 8억 800만원(국비 4억4,700만원, 공단 3억 6,100만원) 집행함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사업비(①+②+③)	681	824	913	705	934	719
① 국비	437	450	450	450	450	450
② 지방비	-	-	-	-	13 ^{추천}	-
③ 공단 예산	244	374	463	255	471	269

참고 2

법 개정에 따른 비용 추계액 산출 주요 내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 비용추계 개요

-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에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의 관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관리”를 추가할 경우 재정소요는 2027년에 8억 5,000만원, 2031년에 9억 2,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44억 2,300만원(연평균 8억 8,500만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안 제6조)	850	867	884	902	920	4,423	885

□ 재정수반 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 산업통상부장관의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함 - 4의2.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의 관리 - 4의3.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관리	재량규정

* 행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조사 수행

□ 비용추계 상세내역

-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조사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회계기금	2022결산	2023결산	2024결산	2025예산
주요국가 산업동향	자체예산	393	—	471	—
	위탁보조사업비(국비)	150	150	150	150
소 계		543	150	621	150
관할산단 전수조사	자체예산	70	255	—	269
	위탁보조사업비(국비)	300	300	300	300
소 계		370	555	300	569
총 계		913	705	921	719

자료: 산업통상부

- 비용추계 대상은 “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의 항목 추가에 따른 조사비용”으로 하고, 산업통상부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추계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기존 산업단지 통계에 연계하는 비용으로 5억원(수출데이터 조사비용 2억원, 데이터 연계비용 3억원), 지식산업센터 현황 조사비용으로 3억 5,000만원(기획 및 분석 8,000만원, 조사비용 2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 동 재정소요 중 일부는 현재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부담할 수 있으나, 동 추계에서는 모두 국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는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준용하여 2027년에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28년 이후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 *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028년 이후 2%
 - 이러한 가정하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8억 5,000만원, 2031년에 9억 2,000만원 등 5년 동안 총 44억 2,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